법무법인(유) 화우
YOON & YANG

LEGAL UPDATE
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5-1호
Feb. 2025

비조치의견 및 법령해석 회신 사례

-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이 「상호저축은행법」 제13조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 업무와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감리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(250009) -

▪ 요청대상 행위

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이 여신심사위원회 업무와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감리업무를 관할하여 겸직할 수 있는지

▪ 관련 법령 요지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지배구조법") 제29조 제2호는 준법감시인은 직무전념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.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「상호저축은행법」제11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,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4호는 "자금의 대출 업무"를 규정하고 있음.

▪ 회신 요지

여신심사위원회 업무와 여신심사와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감리업무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자금의 대출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겸직이 허용되지 않음.

다만,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준법감시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신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,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른 겸직 제한을 위반하지 않음.

※ (참고) 법령해석 회신문(170373, 170461)
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